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5
----------	-----

발의년월일 : 1995. 7. 18

발 의 자 : 한기복 의원
외 6 인

1. 제 안 이 유

-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95년7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및 회의 수당 지급 기준등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제명중 "일비"를 "의정활동비.회의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며
- 나. 일비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안제1조)
- 다. 일비의 지급을 "회의수당"지급으로 변경하고자하며(안제2조)
- 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350,000원으로하고, 그 지급일을 당해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라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안제2조의 2)
- 마.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 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500,000원 이내	월 1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월35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의원회의의 수당지급 범위

구 분	회의수당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일 50,000원 이내

○ 소요예산 : 월 11,900,000원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의수당의 지급) ①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수당 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을 출석
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u>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의</u> ----- -----</p>
<p>제2조(일비의 지급) ① <u>의원이 의원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u></p> <p>② <u>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u> 한다.</p>	<p>제2조(회의수당의 지급) ① <u>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u> 한다.</p> <p>② <u>회의수당은</u> ----- -----</p>
<p>(신 설)</p>	<p>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① <u>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350,000원으로</u>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u></p>
<p>제6조(일비지급기준) <u>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u> 한다.</p>	<p>제6조(회의수당 지급기준) ----- <u>회의수당</u> ----- -----</p>